

1 사업장 관리

① 사업 목표량 부여

-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,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

② 사업장 지도·감독

-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실시
 - 참여자 출석사항 1일 3인(근로자, 작업반장, 사업담당 공무원)이 모두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 부정출석 사전 방지
 - 단, 작업반장은 지역별·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두지 않을 수 있음
 - * 작업반장이 없는 사업장은 선임근로자를 지정하여 출석체크
 - ⇒ 일자리 담당부서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석체크 여부를 수시 확인 할 것
- ☞ <붙임11>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
-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·감독 실시
 - 지자체별로 사업장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업장 관리
- 현장점검 : 자치단체는 시행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·관리
 - ※ 사업장별 출근부를 비치하고 서명날인,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 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(도덕적 해이) 방지
-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작업장 관리요원(작업반장)은 우천·폭염 등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주관 부서의 허락을 받아 결정할 수 있음

③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

- 대상자 :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,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
 -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, 근로능력 미달자 등

<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>

- **근로능력 미달자** :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
- **상습 지각·조퇴자** :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
- **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** :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, 배치 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
- **취중 출근자** : 당일 출근을 금지(당일 사업참여 배제)
- **근무중 무단음주자** :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(근무시간만 임금지급),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

- 지도 감독 규정 : 처벌여부, 처벌요건, 처벌내용, 근무자 제재 등의 지도 감독 규정을 각 사업 시행 기관별로 제정하여 추진
 - 「근로계약서」에 지도감독 규정 명기하여 참여 불허(배제)
 - 감독근무일지에 구체적인 사항(해당근로자, 경고사유, 누적 경고 수 등)을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 조치사항을 고지하는 등 명확한 관리규정 기재
- (불이익 금지)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농번기 일손참여를 위해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, 사전에 적극 안내
- 사업 참여자에게 조끼 및 모자(실외), 명찰 패용(실내)을 의무화하여 도덕적 해이 사전 방지

②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

①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

- 사업담당자 : 시군구별로 단위사업 담당자를 사업시작 전 교육 및 필요시 수시
 -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
 - 작업단계별로 작업장내 위험요인 및 정리정돈상태 점검방법
 - 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 등
- 사업참여자 : 시군구별로 사업시작 전(8시간 이상), 월 1회(2시간 이상) 이상, 작업 시작 전·후 및 필요시 수시
 - 안전사고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되, 참여자의 연령별·사업장 등 재해위험 특성에 맞추어 교육실시

② 지역일자리 안전관리협의회 구성·운영 :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추진

-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관서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'안전보건공단'이라 칭함)과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
- 주관기관 : 기초자치단체(시군구)
- 구 성 : 자치단체 지역일자리사업 책임자, 고용노동부 지방관서,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/지도원 관계관 등
- 운영기간 : '16. 1월 ~ 12월
- 운영방법 : 원칙적으로 월1회 협의회 개최, 중대사고(사망 등) 발생시 수시
- 주요임무 :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·협의 등

③ 안전 책임자 지정·운영 및 임무

○ 사업장 안전책임자 지정·운영

- 당해 사업장 및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자를 안전책임자(사업담당 부서장)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
-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
- 사업장별 관리·감독을 위한 사업담당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(작업반장)을 보조적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음

○ 안전책임자의 임무(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임무부여 시에는 명확히 하고,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월 보고)

-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
-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
-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·보호구 착용지도
-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
- 작업장 순회점검·지도
-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 중심의 이행상태 확인 관리
 - ☞ <붙임12>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대책
-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, 관리대장 작성
-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(현장)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
- 안전사고 관리대장 작성
 - ☞ <붙임13> 안전사고 관리대장

④ 사업장 안전관리 요령

○ 안전보건교육 : 주관(자치단체) / 강사지원(안전보건공단)

-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실시
- * 참여자 연령별, 사업별,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

- 안전보건교육은 자치단체에서 교육생 집합과 교육장 및 기자재를 준비하고, 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지원(요청시)
 - * 자치단체에서 교육계획 수립시 안전보건공단(지역본부/지도원)에 강사지원 요청(무료)
- 파워포인트·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사례 위주 교육 실시
-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
- 안전보건점검 : 주관(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)
 - 사업장·참여자별 및 작업환경에 맞는 특성 교육 실시
 - 작업 단계별로 작업장 내 위험요인·정리정돈 상태 등 점검

<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>

- 도로변 작업시 :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,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
- 여름 우기철 :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, 바닥청소·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,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
- 여름철 폭염 : 안전관련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(장기간보다는 짧게 자주 부여),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작업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,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(그늘)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(15~20분 간격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또는 염분 섭취) 등

▶ **폭염 시 단계별 조치사항**

【폭염주의보 발령시】 : 일 최고기온 33℃ 이상 2일 이상 지속

-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
-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
- 작업 중 매 15~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섭취 (알코올,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)

【폭염경보 발령시】 : 일 최고기온 35℃ 이상 2일 이상 지속

-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
-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내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

▶ **근무시간 및 임금관리**

- 작업중단 시간이 2시간을 경과해도 계속 지속될 시에는 귀가조치
- 임금지급
 - 1일 근로시간의 절반(대기시간 포함)미만 근로 시 일일임금의 반액을 지급
 - 1일 근로시간의 절반(대기시간 포함)이상 근로 시 일일임금의 전액을 지급

- 태풍 : 산사태 및 절개지, 계곡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
- 겨울철 : 추락, 넘어짐(전도), 충돌, 붕괴, 화재, 질식·중독, 저체온증, 동상 등

○ 단계별 안전관리 · 점검 방법

구분	시기	점검내용	점검자
1단계	작업 시작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구 이상 유무 및 착용상태 ○ 장비, 설비의 이상 유무 ○ 작업장 주위 유해·위험요소 확인 ○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○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○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 	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
2단계	작업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·지도 -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○ 작업장 주위 유해·위험요소 확인 ○ 도로 주변 작업시 차량 유도자 배치 	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
3단계	작업 완료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업장 내 순회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○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○ 공동작업용 공구·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 	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

○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

- 개인보호구 지급 : 자치단체
- 착용지도 및 확인 :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
-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

< 사업별 주요 보호구 착용작업 (예시) >

보호구종류	용도	주요 대상작업(예시)
안전모, 안전대	· 물체의 낙하·비래 또는 추락·감전위험 방지	· 지붕 개·보수 작업 등 2m이상 고소작업
안전화	· 물체낙하, 충격,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 보호	· 물건낙하, 찢림, 걸려 넘어짐 작업
보안경	· 비산물·위험물·유해광선에 의한 시력보호	· 예초기 작업 등 물체의 튼 우려 작업,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
안전장갑	· 감전, 유기화합물의 피부 흡수 방지	· 베임, 찢림작업 및 위험물 취급 작업
방진마스크	· 미스트, 흙 흡입방지	· 청소 등 먼지 및 분진발생 작업 · 슬레이트 지붕철거(특급사용)
귀마개, 귀뿔개	· 소음으로부터 청력보호	· 90dB이상 발생하는 작업
방독마스크	· 흡입 방지	·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
송기마스크	· 산소결핍 질식재해 예방·석면 흡입 방지	· 맨홀, 지하정 등 밀폐장소 및 밀폐공간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·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
보호복, 덧신	· 석면분진 노출방지	·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

③ 사업장 재해예방 홍보 강화

○ 캠페인 전개

- 주 관 :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(안전보건공단) 공동
- 기 간 : 1월 ~ 12월말(월 1회 캠페인 실시)
- 참여대상 : 지방노동관서, 안전보건공단, 안전협회 · 보건협회 등
- 장 소 :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사업장 인근

○ 홍보물 제작 · 배부

- 주 관 : 안전보건공단 본부(지역본부/지도원)
- 주요 내용
 - 중대재해 사고사례,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가 주지해야 할 사항
 - 전도, 절단 베임 찢림, 충돌, 추락재해 위험요인 중점 관리
- 홍보 방법
 - 안전관리협의회 개최시 시·군·구 등 자치단체에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홍보물 전달
 - 점검 또는 근로자 교육시 근로자 개인별 홍보물 배부
 - 사업장 인근에서 산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자료 등 배포

④ 근로자 보건 관리

① 건강검진 :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실시(미실시할 경우 사업참여 배제)

②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: 주관(자치단체),
확인(사업담당공무원, 안전책임자)

○ 인력 투입 전 고령자 · 허약자 · 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후 작업배치, 현장에 구급함 비치

- 필요시 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을 통해 혈압·당뇨 등 간단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, 이상자에 대해서는 투약 등의 조치 후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배치
- 혹서기 작업을 피하고 다수 인력작업 장소에는 심폐소생술 실시 가능자 배치
-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결과 통보서 제출
- 단, 2015 및 2016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
- * 건강검진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장 배치 조정 및 참여자 관리

③ 비상시 보고 연락체계 및 후송방안 확보 : 주관(자치단체),
보고 및 후송(사업 담당공무원, 안전책임자)

- 사고발생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인근병원 연락처 및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후송수단 확보
- 사망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

④ 우천시 안전관리 대책

- 작업중 비가 3분 이상 계속 내리는 경우 즉시 중단

⑤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비 조치

- 참여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·소독 유지
-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교육 실시
 - 올바른 손씻기, 기침시 주의사항 등
 - *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<http://www.cdc.go.kr>) 등을 참고

- 쯔쯔가무시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 확행

수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

① 대상사업

-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
 -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, 기타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

② 예방대책

- 사전 보안교육 및 보안각서 징구
 -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철저
- 일모아시스템 등의 ID 및 보안관리 철저
 - 비밀번호 유출 방지, 참여자 교체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, 주기적(월 1회 이상) 비밀번호를 변경
 - * 일모아시스템 ID,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정보제공 금지

6 산재보험처리 절차

① 산재보험 가입

-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산재보험에 가입
 - 산재보험 적용업종은 산재보험 요율표에 의해 결정되어 단일 업종으로 가입이 어려우므로
 -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해발생통계 산출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장명에 반드시 “지역공동체”를 표기하여 가입
 - * 예) ○○사업(지역공동체일자리)
 - 자치단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되 작업(공사)현장 단위로 가입
 -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작업중단 후 추진 시, 세부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새 작업현장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재가입
 - * 산재관리번호는 동일하되 개시번호는 공사현장 단위로 부여됨

【'16년 중앙-지방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합동지침 : 고용부】

-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일자리사업은 '사업의 종류별'로 각각 보험관계가 성립
- 농촌 일손돕기 참여로 공공근로 세부사업의 종류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
- 한편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
 - * 이 경우 미신고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징수금 등의 징수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 종류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 신고 조치

② 재해발생시 처리

○ 재해발생시 산재처리

-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재해조사 실시
-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

*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정 서식

○ 휴업급여 신청 등 요양처리

-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*가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>(*사업담당 부서장)

☞ <붙임14> 단위사업별 산재보험요율

7 산업 재해자 보상비 지급 절차 및 내용

* 자료출처 : 근로복지공단,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① 사망했을 경우

○ 유족급여

-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- 처리절차 : 유족보상청구서 제출 →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→ 수급권자 결정 → 유족보상 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

* 유족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반액 일시금(유족연금 50% 감액지급)으로 지급

○ 유족보상일시금 : 평균임금 × 1,300일분

○ 유족보상연금 :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

- 기본금액 : 급여기초연액(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)의 47/100에 상당하는 금액
- 가산금액 :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1인당 급여기초 연액의 5/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.
다만, 그 합산액이 20/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기초 연액의 20/100에 상당하는 금액

< 유족보상연금 산정 사례 >

* 평균임금 : 50,000원(유족 4인 : 처, 자녀3) *

○ 기본금액 산정

- 평균임금×365일×47/100% = 50,000원×365일×47/100% = 8,577,500원

○ 가산금액 산정

- 평균임금×365일×5/100%×4인 = 50,000원×365일×5/100%×4인 = 3,650,000원

○ 유족보상연금액

- 기본금액+가산금액 = 8,577,500원+3,650,000 = 12,227,500원

따라서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,018,958원을 지급

○ 장의비

-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

* 최고금액 : 14,217,340원('16.1.1 ~ '16.12.31 적용)

* 최저금액 : 10,061,800원('16.1.1 ~ '16.12.31 적용)

- 다만,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
- 지급절차 : 장의비 청구 → 장의비 산정 및 지급결정 → 장의비 지급

② 부상을 당했을 경우

○ 요양비

-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요양비(치료비, 간병료, 이송료 등)를 지급
-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
- 다만,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가능

○ 휴업급여

-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(입원/통원)이 4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
- * 휴업급여액 = 평균임금×0.7×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일수

○ 장해급여

-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급
- * 장해급여 = 평균임금×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